

자산보관위탁계약 변경계약서

본 자산보관위탁계약 변경계약서(이하 “본 계약”)는 2021년 [9]월 [9]일(이하 “본 계약일”)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다.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하나트러스트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갑”)
- (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6(을지로2가)에 본점을 둔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이하
“을”)

전문

갑과 을은 2018년 7월 6일 갑이 을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갑의 자산보관업무를
담당할 자산보관기관으로 선임하고, 을은 자산보관업무를 이행하는 내용의
자산보관위탁계약서(이하 “본건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갑과 은은 본건 위탁계약서의 일부 사항을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음

제 1 조 (정의)

본 계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은 이상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본건 위탁계약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 2 조 (본건 위탁계약서의 변경)

본건 위탁계약서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건 위탁계약서 제21조(보수)와 관련하여 갑은 갑의 제7기 및 제8기 사업연도 기간에 대한 보수로서 금 7,483,690원(이하 “최종 보수”)을 2021년 [9]월 [10]일까지 을에게 지급한다. 명확히 하면, 최종 보수는 갑이 제8기 사업연도 내에 청산하는 경우 추가 정산되지 아니한다.

제 3 조 (효력의 발생 등)

- ① 본 계약은 본 계약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본 계약은 본건 위탁계약서와 단일한 문서를 구성하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본건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하되, 본 계약과 본건 위탁계약서 사이에 배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음 기명날인 또는 서명 페이지를 위하여 이하 여백)

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갑: 주식회사 하나트러스트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대표이사 박 영 희



을: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6(을지로2가)

대표이사 타이완국인 귀 명 쟁

